

서울특별시 강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0년 4월 24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20년 4월 13일

나. 제출자: 황영호 의원 외 6명

다. 회부일자: 2020년 4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7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20. 4. 24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황영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행동장애의 일종인 저장강박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에 주거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저장강박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이라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- 2) '저장강박 의심가구'에 대한 용어 정의를 규정함(안 제2조)
- 3)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4)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(안 제4조)
- 5)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함(안 제5조)
- 6)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7)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8)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, 「민법」,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합 의: 복지정책과
- 다. 기 타: 입법예고(2020. 4. 14. ~ 4. 19) 결과: 의견없음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해 본인의 가족 및 이웃들에게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를 대비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,
- 이번 조례안 제정은 서울시 최초로 우리구 '저장강박 의심가구'에 대해 제3조 구청장의 책무로 행정·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부서간 협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, 제6조에서 지원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,

- 저장물의 수거 및 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저장강박 의심가구 및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리라 기대됩니다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- 제66조(의안의 발의)**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-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- ⑤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포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.

□ 민법

- 제913조(보호, 교양의 권리의무)**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.
- 제916조(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)**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.
- 제928조(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)**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, 제924조의2,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.
- 제929조(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)** ①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.
- ② 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.

제976조(부양의 순위) ①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.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 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.
②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권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제39조(보호의무자) ① 「민법」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
4. 미성년자
5. 행방불명자
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후견인·부양의무자의 순위에 따르며 부양의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 976조에 따른다.